

규정류(제정·개정)입안서

1. 규정류명 :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2. 규정류(제정·개정)사유

가. 내부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사무분장 체계 재정립을 위해 입학전형실무위원회 삭제

나. 내부감사 처분 요구사항에 따라 부서(입학처)에서 관리하는 규정 간 통일성을 위해 용어를 하나로 통일하여 규정의 일관성을 기함

3. 주요내용

가. 입학전형실무위원회 내용 삭제

나. '중임'과 '연임'을 혼용하여 '연임'으로 통일

4. 시행예정 또는 요청일 : 공포일로 부터

5. 참고사항

가. 관련규정: 해당없음

나. 예산조치: 해당없음

다. 관련부서: 해당없음

6. 첨부사항

가. 신·구조문대비표(개정시) 1부.

나. 규정류(제정·개정)안 전문 1부.

2026년 8월 10일

소관부서 : 입 학 처

(인) 2/13

관련부서 :

신·구조문대비표

규정명 : 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현행	개정안	개정이유
제1조(목적) (생략) 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0인 내외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8.1.) ③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중임할 수 있다.</u> ④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3.8.) 제3조(임무) (생략) 제4조(분과위원회) ① <u>위원회에 입학전형사정위원회 및 입학전형실무위원회를 둔다.</u> 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사정원칙의 심의 2. 신입학 합격자의 사정 ③ <u>입학전형실무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</u> 1. <u>입시계획 및 진행 관리에 관한 사항</u> 2. <u>입시에 따른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</u> 3. <u>입시출제, 인쇄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</u> 4. <u>입시자료의 전산 처리에 관한 사항</u> 5. <u>성적채점 및 검산에 관한 사항</u> 6. <u>성적이기, 정리 및 사정표 작성에 관한 사항</u> 7. <u>면접 및 실기시험 계획, 진행 및 이에 부수되는 실무에 관한 사항</u> 8. <u>미등록자 추가합격(결원보충)에 관한 사항</u> 제5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8.1.) 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. ③ <u>입학전형실무위원회의 위원은 입학처 직원과 교직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8.1.)</u> ④ <u>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있다.</u> 제6조(회의)~제8조(보칙) <생략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	제1조(목적) (현행과 같음) 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0인 내외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(개정 2020.8.1.) ③ <u>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00.00.)</u> ④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3.8.) 제3조(임무) (현행과 같음) 제4조(분과위원회) ① <u>위원회에 입학전형사정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6.00.00.)</u> 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 1. 사정원칙의 심의 2. 신입학 합격자의 사정 ③ <u><삭제 2026.00.00.></u> 1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2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3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4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5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6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7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8. <u><삭제 2026.00.00.></u> 제5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8.1.) 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. ③ <u><삭제 2026.00.00.></u> ④ <u>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00.00.)</u> 제6조(회의)~제8조(보칙) <생략> 부칙 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 부칙 <u>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</u>	연임으로 통일 입학전형실무위원회 내용 삭제 입학전형실무위원회 내용 삭제 연임으로 통일 공포일로부터 시행

입학전형관리위원회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장안대학교 학칙에 의거하여 입학전형제도의 개발 및 입학전형관리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계획·심의하기 위한 입학전형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본 위원회의 구성은 대학입시공정관리위원회 위원을 제외한 10인 내외의 위원을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하고, 위원은 총장이 위촉한다. (개정 2020.8.1.)

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00.00.)

④ 위원회에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(개정 2024.3.8.)

제3조(임무)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입학전형계획 및 준비에 관한 사항
2. 입학모집 전형 및 합격자 사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

제4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에 입학전형사정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26.00.00.)

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.

1. 사정원칙의 심의
2. 신입학 합격자의 사정

③ <삭제 2026.00.00.>

1. <삭제 2026.00.00.>
2. <삭제 2026.00.00.>
3. <삭제 2026.00.00.>
4. <삭제 2026.00.00.>
5. <삭제 2026.00.00.>
6. <삭제 2026.00.00.>
7. <삭제 2026.00.00.>
8. <삭제 2026.00.00.>

제5조(분과위원회 구성) ①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입학처장으로 한다. (개정 2020.8.1.)

② 입학전형사정위원회의 위원은 각 학과장으로 한다.

③ <삭제 2026.00.00.>

④ 분과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(개정 2026.00.00.)

제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7조(보고 및 시행)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.

제8조(보칙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2017년 10월 1일부터 소급적용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(개정 2020.8.1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0년 6월 22일부터 소급적용하여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6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.